

SK에너지, 오납관세 환급소송 승소

울산지법, 관세·부가세 3억9000만원 환급 판결 ... 할당관세 추천받아

울산지법 행정부는 2월24일 “오납한 관세를 돌려달라”며 SK에너지가 울산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오납한 3억9000여만원의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해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한석유협회로부터 사건 원유에 대해 나프타(Naphtha) 제조용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고 수입신고를 할 때 이미 피고의 전산통관시스템을 통해 신고하고 대한석유협회의 할당관세 추천서가 시스템에 저장됐다”며 “사건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서 제출요건은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고는 원유 수입신고시 실수로 할당관세 추천번호의 기재를 누락해 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됐다”며 “피고는 관세법상 신고납부 원칙에 맞춰 원고의 사건 세액경정청구시 원유를 나프타 제조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면 될 것을 조사없이 사건 처분을 했으나 원유는 실제 나프타 제조용으로 사용된만큼 할당관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2005년 말 싱가포르의 원유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원유 65만배럴을 전자서류 전송시스템 방식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율 0%)인데도 실수로 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원유(할당관세율 1%)로 신고수리해 관세를 오납했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오납한 관세 3억6000여만원과 부가세 36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세액경정청구를 했고, 세관측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할당관세 추천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나프타 제조용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경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5>